

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(일반회계)

의안 번호	제164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4. 6. 16.
제출자 : 예산군수

1. 제안이유

-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,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관리계획내역

가. 총괄

구	분	필지(건)수	수량(m ²)	가액(천원)	비고
합	계	3	23,220	3,096,999	
취득 (교환)	소계	2	11,610	1,513,818	
	토지	2	11,610	1,513,818	
	건물	-	-	-	
처분 (교환)	소계	1	11,610	1,583,181	
	토지	1	11,610	1,583,181	
	건물	-	-	-	

나. 관리계획의 세부내역

○ 재산취득(교환)

구 분		필지(건)수	수량(㎡)	가액(천원)
합 계		2	11,610	1,513,818
취 득	토 지	2	11,610	1,513,818
	건 물	-	-	-

○ 재산처분(교환)

구 분		필지(건)수	수량(㎡)	가액(천원)
합 계		1	11,610	1,583,181
취 득	토 지	1	11,610	1,583,181
	건 물	-	-	-